

의안번호	2210658
의 퇴 인	이학영 의원
회 답 일	2025. 6. 24.
추계번호	25F304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안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4조의36 (안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)	○ 기업이 안전설비의 설치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 - 공제대상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(기업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의 설치에 지출한 비용 ※ 안전설비: 스마트 안전설비, 자동화 장비,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,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- 공제율(%): 중소기업 35, 중견 30, 대 25 - 적용기한: 2030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4조의36 (안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산업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안전설비 설치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4조의36 신설)
 - 공제대상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스마트 안전설비, 자동화 장비,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,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의 설치에 지출한 비용

- 공제율(%): 중소기업 35, 중견기업 30, 대기업 25
- 적용기한: 2030.12.31.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인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해당 비용의 지출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지출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개정안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는 기업 및 안전설비의 구체적인 범위,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 - 개정안의 공제대상인 안전설비는 스마트 안전설비, 자동화 장비,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,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설비의 범위와 설치비용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개별 시설 및 비용항목의 공제대상 포함 여부를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- 또한, 기업의 기업규모별 안전설비 설치에 지출하는 비용 등의 현황과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산업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 및 개정안에 따른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현재 기업의 산업재해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설비에 지출하는 비용 통계는 「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」에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통계가 있으나, 건설업에 한정하여 집계되며 안전시설비의 범위가 개정안의 공제대상에 얼마나 포함될지 알 수 없어 공제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
 - ※ 「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」상 안전시설비의 범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, 추락방호망, 안전대 부착설비, 방호장치 등의 구입·임대 및 설치, 스마트 안전장비 및 화재 위험작업시 사용하는 소화기 구입·임대 비용 등을 포함
 - 참고로, 「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」(2023.8.)에서 조사된 833개 건설 사업장의 안전시설비 평균은 1억 7,333만원 수준이며, 사업장별 안전시설비 지출 분포는 다음과 같음

[표 1] 사업장별 안전시설비 지출 분포

(단위: 개)

안전시설비	~0.1억원	0.1~0.5억원	0.5~1억원	1~3억원	3억원~	계
사업장수	217	272	97	120	127	833

자료: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「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」, 2023.8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